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73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김희정 · 서지영 · 배준영
백종헌 · 김성원 · 권영세
주호영 · 이종배 · 최수진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만 가능할 뿐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경선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경선흥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선후보자간 경선운동 방법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은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거현장에서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은 물론 법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8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물론,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아울러 다른 경선후보자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내경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7조의6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제3호의”를 “제4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제3호의”로 한다.

1.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법

제57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인 경우 해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당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해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으로, “된 경우와”를 “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동 금지) ①·② (생략)

<신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公務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任·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

운동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인 경우 해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所屬職員 또는 選舉區民에게 敎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業績을 弘報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選舉權者의 支持度を 調査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4 ~ 7.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政黨의 政綱·정책과 主義·主張을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弘報·宣傳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를 제외하고는 政黨이 개최하는 時局講演會, 政見·政策發表會, 黨員研修·團合大會 등 일체의 政治行事に 참석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현행과 같음)

② -----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

3. -----

나 選舉對策機構, 選舉事務所, 選舉連絡所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5. (생략)

③·④ 삭제

⑤ ~ ⑦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 되거나 -----

-----.

4.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